

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09.8.13>

공고 제 2022-8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일

아라동 장 인



이름	주소	직권조치사항
검단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아파트 63세대	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73, ***동 ***호 (당하동, 검단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)	공동주택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(공란 ⇒ 검단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)